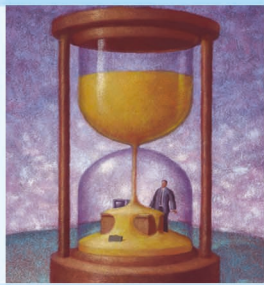




| 2004.1 |



# 200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.



중소기업 도전과 혁신, 도약의 길! 중소기업청이 함께 가겠습니다



**중소기업청**



안녕하십니까

중소기업청장 유창무입니다.

『200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』는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화된 내용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자입니다. 본책자를 통하여 변화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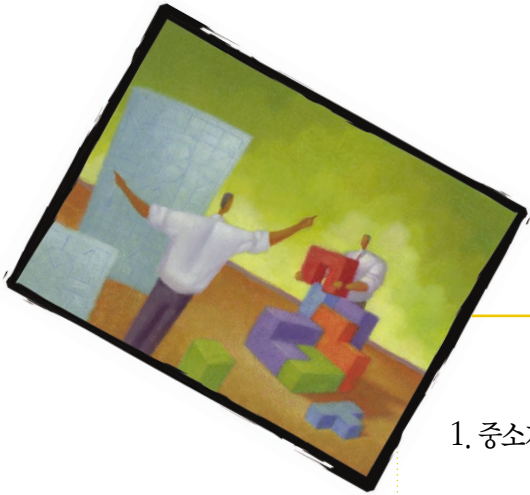
작년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판매가 부진하였고 인력난과 더불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.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한해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개선되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정부는 더욱 최선을 다하여 지원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회사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중소기업청장 유창무 드림

# Contents



## 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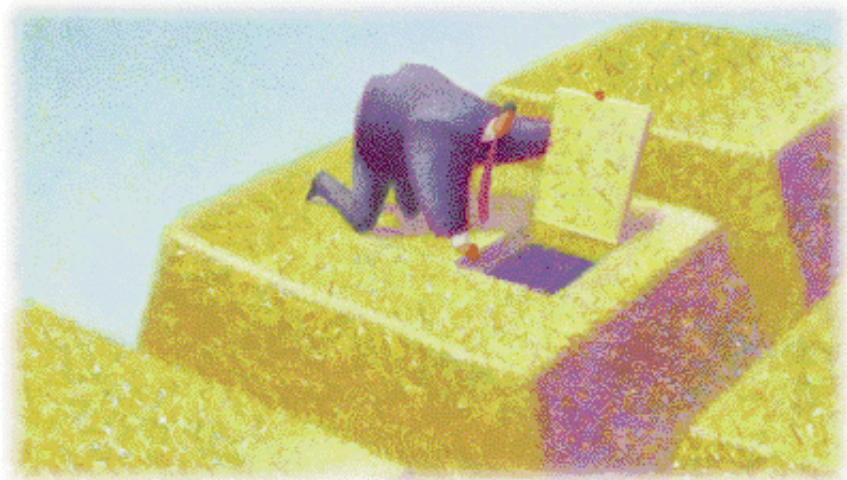
C o n t e n t s

- 1. 중소기업지원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/ 4
- 2. 중소기업 관련법령은 이렇게 개정 시행됩니다 / 6
- 3. 중소기업 지원 체계, 이렇게 개편됩니다 / 7
- 4. 변화된 중소기업 주요 지원시책입니다 / 9
  - 자금지원 -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/ 9
  - 인력지원 - 중소기업 인력유입환경 개선 / 11
  - 판로지원 -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기반 확충 / 12
  - 기술지원 -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/ 14
  - 벤처기업지원 - 지속적 육성 및 M&A 활성화 / 16
  -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-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반 구축 / 18
  - 여성기업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/ 19
- 5. 정책 및 참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/ 20
  - 지원시책 일몰제 및 상시평가체제 도입 / 20
  - 참여지식경영시스템 도입 / 21
  - 민원 · 제도개선 연계시스템 도입과 정보공개확대 / 22
- 여기는 중소기업청입니다 / 23



# 1 중소기업지원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중소기업청 2004년도 예산규모는 1조 4,721억원으로 03년(1조 8,492억원)에 비해 약 20% 감소하였으나, 이는 IMF 위기극복을 위해 대폭 확대되었던 금융지원예산이 축소·조정되었기 때문이며, 기술·인력·수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.
- 특히,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「대·중소기업간 협력증진」, 「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」 사업 등 12개 지원시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.





■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백만원)

구 분	2003 예산 추경포함 (A)	2004 예산안 (B)	증 감 (%)
합 계	1,849,224	1,472,103	△20.4
① 중소기업 기술력강화 지원	192,413	212,562	10.5
②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	33,854	35,712	5.5
③ 중소기업 수출·판로 지원	120,044	173,128	44.2
④ 중소기업 인력 지원	7,550	25,500	237.7
⑤ 중소기업 금융 지원	1,020,000	705,900	△30.8
⑥ 창업·벤처 인프라 확충	33,000	26,100	△20.9
⑦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 지원	18,219	18,119	△0.5
⑧ 기타 지원 (중산기금 전출 등)	379,957	228,751	△39.8
⑨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	44,187	46,331	4.8



## 2 중소기업 관련법령은 이렇게 개정 시행됩니다

### 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(2004. 1.1 시행)

- 본 법률에 따라 교수·연구원의 기업임직원의 겸임·겸직이 특례로 인정되며, 중소기업제조업 장기근속자(10년이상)에게 주택공급시 우선분양제도가 실시되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의 구조적 요인별 해소대책이 시행됩니다.

### 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(2004. 4월 시행 예정)

- 벤처기업의 M&A 대상이 확대되고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치공인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며,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### ■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개정 (2004. 1. 1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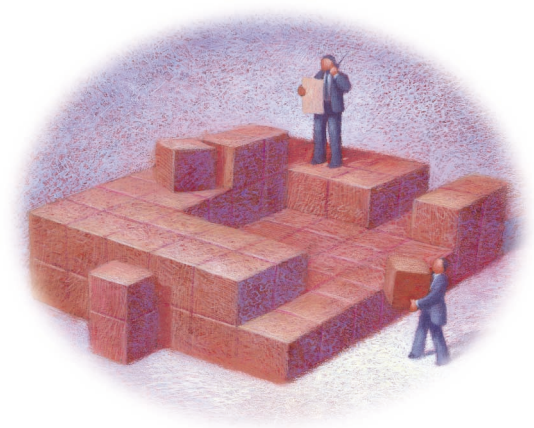
- 「어음보험제도」를 「매출채권보험제도」로 확대하여, 매출채권 등 기업간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포괄하여 지원합니다.

### 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(2004. 1월 시행 예정)

- 연합회의 업종별 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합회 회원인 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분할하고자 하는 일부업종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합회 분할이 가능해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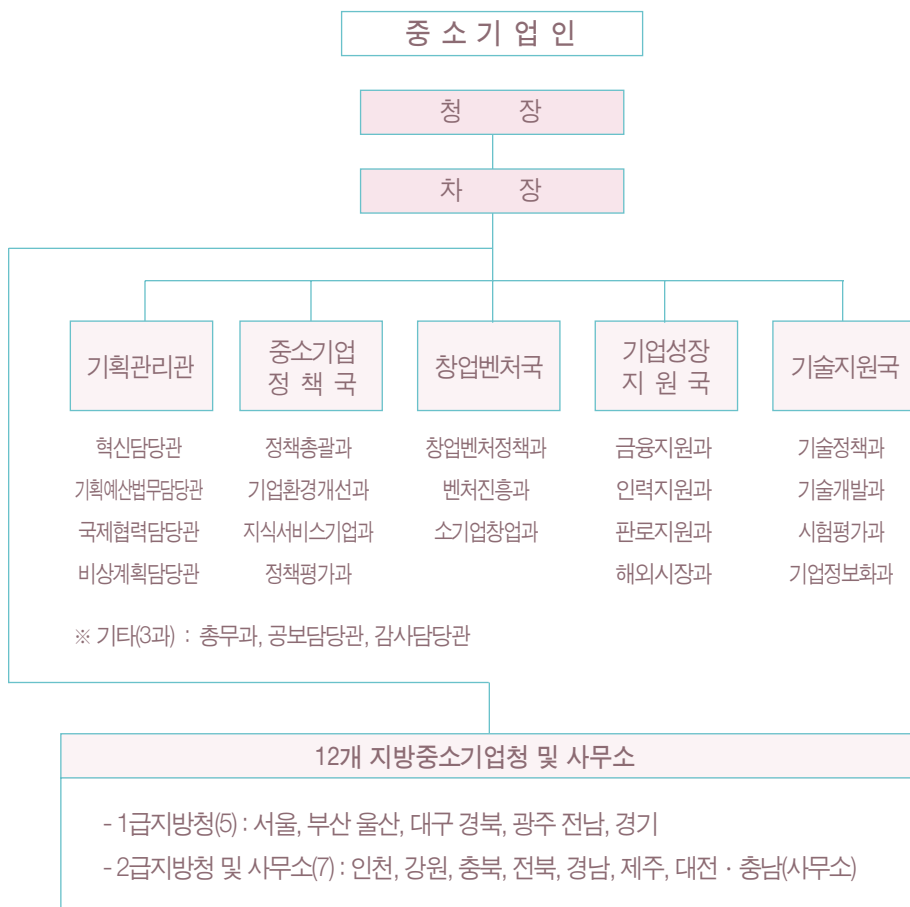
### 3 중소기업 지원 체계, 이렇게 개편됩니다

-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였습니다.
  - 미래전략적 핵심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**행정혁신기능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창업기능을 강화**하였습니다. 일 잘 하는 정부 · 신뢰받는 정부 · 대화 잘 하는 정부, 저희가 앞장서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  -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을 증진시키고, 중소기업의 공동화(空洞化)에 적극 대응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**기업환경개선과, 해외시장과를 신설**하였습니다.
  - 또한, 중소기업과 재래시장,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담당할 **지식서비스기업과를 신설**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



■ 새로운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

## 4 변화된 중소기업 주요 지원시책입니다

### 자금지원 -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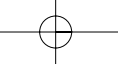
문의 :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) 481-4376

-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활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,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신용대출규모를 확대 하였으며, 지원체제를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였습니다.
  - ▶ 중소기업은 2.4조원의 정책자금과 40조원 수준의 신용보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의 **신용 심사·평가방식을 개편**하였습니다.
  - ▶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쉽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, **정책자금이 통합·단순화** 되었으며, **전자보증서가 도입되고 신청서류가 간소화**되었습니다.
    - ▶ **신용 심사·평가방식 개편** :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별 점수제 (Scoring)에서 기업별 등급제(Rating)로 전환하여 심사평가시 전년도 재무상태 위주에서 미래 기업가치 평가비중을 강화
    - ▶ **정책자금의 통합·단순화** : 구조개선,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통·폐합함으로써 현행 10종에서 8종으로 단순화
    - ▶ **신청서류의 간소화** : 정책자금 인터넷 신청·접수, 전자보증서 발급 및 금융거래확인서의 전자화 추진으로 정책자금 One-Process 대출체제 구축 추진
- 매출채권 등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「어음보험제도」가 「매출채권보험제도」로 확대되며, **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**합니다.
  - ▶ **매출채권보험제도** : 상업어음을 포함한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당해 판매대금의 회수 불능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
  - ▶ **환리스크 관리 지원** : 선물거래 POOL을 구성하여 거래 수수료를 인하고 증거금의 일부를 보증지원하여 은행-중소기업 간 선물거래 활성화를 지원



-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도 5,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지원 프로그램(SLP)을 도입·운영하여 영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겠습니다.
  -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시설·설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본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·접수 하면 중진공은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. 약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게 되고 시중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- ▶ SLP : 중소기업 위한 특별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소기업특별법상의 소기업에 대하여 3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
    - ▶ 소기업 :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수 10인, 기타 5인 이하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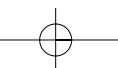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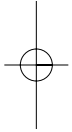




## 인력지원 - 중소기업 인력유입환경 개선

문의 :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042) 481-4398

-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인력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력난 완화를 적극 추진합니다.
  -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의 개발·보급이 확대되며,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(중합)이 더욱 내실화됩니다.
  - 「청년채용패키지사업」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을 수요에 맞게 교육 훈련한 후에 채용연계할 수 있습니다.
    - ▶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: 연구기관, 대학이 중소기업(3개 이상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열·분진·냄새 등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장비 개발
    - ▶ 중소기업 체험활동 :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근무, 취업 교실 참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취업 유도
    - ▶ 청년채용패키지사업 : 업종별 조합·단체가 회원중소기업의 채용수요에 근거한 교육훈련 및 채용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
  
- 2004년 1월부터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.
  - 교수·연구원의 기업임직원 겸임·겸직 특례인정이 일반 중소기업(제조업)까지 확대되고,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시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인정받게 되었습니다.
  - 중소기업 장기근속자(10년이상)에게 주택공급시 우선분양제도가 시행되고, 전역예정인 군장기복무자가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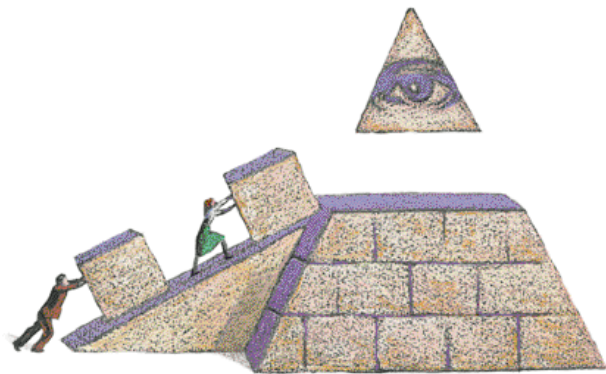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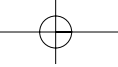


## 판로지원 -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기반 확충

문의 : 기업성장지원국 판로지원과, 해외시장과 042)481-4473

-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구매 제도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합니다.
  - 수출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(1,200개 선정)은 수출활동을 일괄 지원받게 되며, 중국 등 신흥시장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파견하여 수출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「**해외시장개척요원**」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.
  -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이 확대되며, 연간 2조달러 규모의 국제조달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정보망과 현지조달 에이전트를 통하여 **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**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- ▶ **해외시장개척요원** :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근로자 및 대졸 미취업 인력을 선발,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파견하여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
    - ▶ **국제조달시장 통합정보망** : 연간 2조달러 규모의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각종정보 (입찰 및 주계약자 정보 등)를 실시간으로 제공
    - ▶ **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** : 현지 조달전문 Agent, 현지 교포기업 등을 통하여 응찰서류 대행작성, 주계약자와의 만남 주선 등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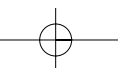


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가 개편됩니다.

- 중소기업청장에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등을 조사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,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발주시 하도급 계약서 준수 여부 등 공정 하도급 감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.

※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개정안 국회제출

- ▶ **공공구매제도**: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를 위해 매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매토록 조치





## 기술지원 -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

문의 :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) 481-4440

■ 선진국의 70%수준인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개발후 사업화 및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지원을 확대합니다.

- INNO-BIZ기업의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선정을 위하여 상시평가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신용대출 등 강화된 금융지원 및 컨설팅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10% 확대한 1,743억원을 지원하며,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전략과제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.
- 신기술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의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예비창업자 등의 아이디어를 적기에 기술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지원분야가 국방에서 전력·가스 등으로 확대하고, 지원금액이 최고 1억에서 2억으로, 개발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에 따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집니다.
  - ▶ INNO-BIZ기업 : 기술경쟁력을 갖추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발굴하여 자금·기술 등 일괄지원
  - ▶ 신기술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: 예비창업자 및 영세중소기업 등의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·사업성 사전평가 지원
  - ▶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: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하여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를 제품화하여 향후 일정 기간 전량 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로 기술개발비를 지원





■ 지방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시험분석 지원이 강화되며, 해외인증획득지원 분야가 확대됩니다.

- 지방중소기업청은 공통 수요가 있는 고가 **시험분석장비**를 **확충**하고, 지역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대학·연구기관등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시험분석을 지원합니다.
- **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**이 연중 수시 접수체제로 전환하여 수출기업에 적기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, 업체당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인증 2개품목으로 확대하고, 지원 한도도 1,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대상국의 수입장벽이 낮아집니다.
  - ▶ **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** :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

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강화되며, 기술 수출·도입 등 해외 기술협력 지원이 확대됩니다.

- 재무, 마케팅 등에 대한 **경영컨설팅 지원사업**을 수시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기 경영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중소기업의 **기술수출 및 해외우수기술 도입**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 등 주요선진국 대상 해외기술설명회 개최 및 러시아협력센터 등을 통한 기술협력 지원을 강화합니다.
  - ▶ **경영컨설팅지원사업** :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자원 및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컨설팅서비스 지원





## 벤처기업지원 - 지속적 육성 및 M&A 활성화

문의 :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, 벤처진흥과 042) 481-4428

■ 시장평가에 의해 선별·육성되도록 벤처캐피탈, 코스닥시장 및 **M&A시장**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합니다.

- **혁신능력평가점수가 상향 조정** (50점-55점)됨에 따라 벤처확인요건이 강화됩니다.
-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간에 전략적 제휴 등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합병과 영업양수의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주식교환이 용이해졌습니다.
  - ▶ **기업혁신능력** : 벤처기업 확인 절차시 유형별 요건 확인 전에 선행적으로 실시되는 평가
  - ▶ **벤처기업 M&A 활성화** :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대상 확대, 벤처기업의 합병·영업양수 절차 간소화, 벤처기업 M&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







■ 주요 수출시장에 「**해외지원센터**」와 「**벤처공동물류·A/S센터**」를 운영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, 교포자문단과 함께 **미국 SBIR**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•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외자유치전문기관을 통한 IR자료 작성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해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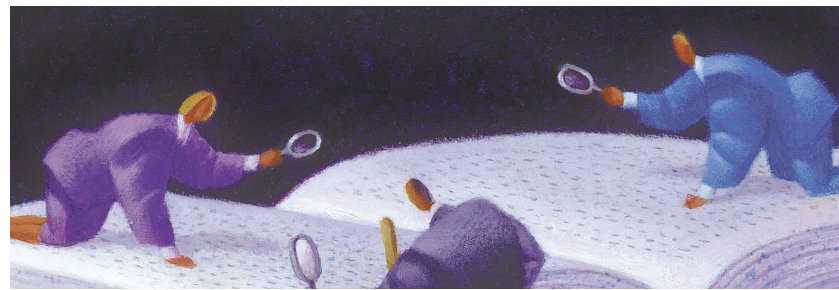
- ▶ **해외지원센터** : 해외에 네트워크가 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, 정보 제공, 마케팅을 대행
- ▶ **벤처공동물류·A/S센터** : A/S를 대행하고 물류창고 공간을 제공하여 벤처기업이 해외진출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
- ▶ **SBIR진출지원** : 국내 벤처기업이 SBIR에 참여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자금을 받고 정부 조달 등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포자문단이 지원
- \***SBIR** : 미국 연방정부 R&D 자금의 2.5%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는 프로그램
- ▶ **해외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** :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중소·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전문기관이 전문 컨설팅 및 전문 IR자료 작성 지원



##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-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반 구축

문의 :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, 소기업창업과 042) 481-4497

- 중소기업의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체계를 전환합니다.
  - 역내 창업지원 유관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까이에서 통합 창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새롭게 운영되는 **중소·벤처대학원**을 통하여 세계적수준의 창업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새로운 판로개척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, **창업동아리 지원** 확대를 통하여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.
    - ▶ **중소·벤처대학원 운영** : 지역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6개월 과정의 『벤처창업전문과정 (Entrepreneurship Intensive Program, EIP)』을 개설·운영함으로써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전문 교육 실시
    - ▶ **창업동아리 지원 제도** : 대학내 창업동아리를 신규발굴하여 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, 아이템 개발·시제품제작비 등 지원
- 소상공인지원자금 집행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권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  - 다양화된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통하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운영이 더욱 내실화됩니다.



## 여성기업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

문의 : 창업벤처국 소기업창업과, 중소기업정책국 지식서비스기업과 042) 481-4497, 02) 503-7925

■ 여성우위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,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.

- 창업을 원하는 여성은 **여성창업보육센터**의 창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특화된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·연수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e-lancer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1개월에서 3~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**여성창업보육센터** :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업체에게 작업공간 및 경영·기술지도, 정보제공 등 지원

■ 재래시장의 주변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경우, 더욱 확대된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특히, 새롭게 「**재래시장 통합 콜센터**」 및 「**시장경영지원센터**」가 설치되며, 고유브랜드 개발이 지원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**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** : 인터넷 주문·접수, 공동 배송 등이 가능한 「One-Stop 고객 서비스형 통합 콜센터」구축

▶ **시장경영지원센터** :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경영진단 및 선진유통기법 컨설팅 업무 등 수행



# 5 정책 및 참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

## 지원시책 일몰제 및 상시평가체제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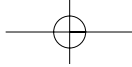
문의 :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) 503-7928

■ 신규시책 수립시 「일몰제」 및 「지원예시제」가 도입되어 실효성없는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 것이 방지됩니다.

- 일몰제를 통하여 일정기간 한시적 지원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시책은 계획수립시 중기가 설정되어 기한이 도래하면 시책이 종료됩니다.
- 향후 일정시점에 지원시책(사업)의 지원 대상, 조건 등이 변경·폐지됨을 사전 예고하고, 그 시점이 도래하면 예고된 내용대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전에 제도운영 방향을 알려 드리겠습니다

■ 중소기업이 시책을 직접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「상시평가체제」를 도입합니다.

-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.
-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각종 시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▶ 상시평가체제 : 주요 중소기업정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통하여 평가한 후 학계·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



## 참여지식경영시스템 도입

문의 : 기획관리관 혁신담당관실 042) 481-4356

■ 중소기업 분야 전문가, 중소기업인, 일반국민들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『참여지식경영 시스템』(중소기업정책포럼 forum.smba.go.kr)을 도입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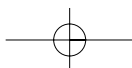
- 정책포럼은 해당주제에 대하여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가입하여 온라인(On-line)과 오프라인(Off-line)상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
- 동 포럼에서 제시된 우수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Outsourcing 하는 형식으로 정책화 됩니다.

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구매(Buy-back)제도와 정책Mate제도 등을 통해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제안자가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.

- 의견제안, 민원제기 등 단편적이었던 국민참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▶ **나중구매 (Buy-back)** : 포럼에서 제안된 우수 정책제안서를 평가하여 나중구매 (시상금함으로 써 정책 연구 및 제안 노력에 대해 보상 (매년 최소 4개 이상을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500만원 이하 지급하여 구매할 계획임)

▶ **정책메이트** : 포럼에서 연구·제안한 아이디어의 효용성이 높을 경우, 제안자가 행정 실무자와 함께 정책 수립 및 집행,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도





## 민원·제도개선 연계시스템 도입과 정보공개확대

문의 : 기획관리관 혁신담당관실, 총무과 042) 481-4356, 4318

- 중소기업 수요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「민원·제도개선 연계시스템」이 도입되어 시행됩니다.
  - 민원(온라인, 오프라인), 접수된 국민 제안 및 토론(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),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파악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  - ▶ **민원제도개선 연계시스템** : 옴부즈맨을 통하여 선별된 제도개선 과제를 매월 업무혁신팀 회의를 통하여 집중 논의하여 제도개선, 정책반영으로 연계
-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하며, 전자민원실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합니다.
  - 중소기업청 정보공개자료방을 통하여 「행정정보공개」를 확대하였으며,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게 제공해드립니다.
  -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불편한 사항에 대한 해결을 더욱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으며, 여러분의 제안·토론을 담아내는 「국민참여마당」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.
    - ▶ **행정정보공개제도** :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





## 여기는 중소기업청입니다

- 홈페이지 이용안내 : [www.smba.go.kr](http://www.smba.go.kr) 에 접속하시면
  - ▶ 자금, 인력, 수출, 기술 등 지원시책
  - ▶ 전자민원실을 통한 질의답변, 민원해결
  - ▶ 국민참여마당을 통한 제안, 토론
  - ▶ 정보공개방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
- 중소기업정책포럼 참여 : [forum.smba.go.kr](http://forum.smba.go.kr) 에 접속하시면
  - ▶ 포럼을 통하여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

### 중소기업청 찾아오시는 길

▶ **본청** 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 
 대표전화 042) 481-4352, 02) 2110-7553, 042) 481-4344  
 전 송 042) 472-3258

#### ▶ 지방청

- 서울지방청 : 경기도 과천시 흥촌내길 96(중앙동 2번지) 02) 509 - 7018~9
- 부산울산지방청 : 부산광역시 북구 신만덕길 30(만덕동 763-13) 051) 601 - 5111
- 대구경북지방청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30(송현동 2003-18) 053) 626 - 2601
- 광주전남지방청 :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2길 14(농성동 300번지) 062) 360 - 9109
- 경기지방청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-2번지 031) 201 - 6800~2
- 인천지방청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구 34(논현동 445-1 3B/1L) 032) 818 - 8321
- 강원지방청 :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(퇴계동 856-8) 033) 260 - 1600
- 충북지방청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 136(북대동 418-6) 043) 230 - 5300
- 전북지방청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16(팔복동 2가 270) 063) 210 - 6400
- 경남지방청 :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(신월동 100-3) 055) 268 - 2511
- 제주지방청 : 제주도 제주시 다라곶길 15(월평동 299-1) 064) 723 - 2101
- 대전충남사무소 :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64(장동 23-3) 042) 865 - 6100, 114

본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지원정책, 정보공개자료방을  
 방문하시거나 해당과 및 지방청으로 연락바랍니다.



## 중소기업청

우)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
전화 042)481-4356 팩스 042)472-3276 홈페이지 <http://www.smba.go.kr>